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 반 호

240

발의연월일: 2020. 6. 5.

발 의 자 : 김정우·허 은·이현숙·

김성주·박지남 의원(5명)

1. 주문

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O 출석일자(예정) : 2020.07.03(금) / 2020.07.10.(금)

※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O 출석대상 :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

※ 관계공무원은 『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』 제48조에 따름

O 출석이유 : 구정질문 및 답변

O 출석장소 : 서초구의회 본회의장

2. 제안이유

○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- O「지방자치법」제42조1)
- O「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」제48조2)

- 2) 제48조(구청장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부구청장
 - 2.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·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(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) 이상인 사람
 - 3. 법 제113조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
 - 4. 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
 -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이하인 사람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¹⁾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 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명부

발 의 자	
의 원 명	서명·날인
기 지 수	R
3 =	Mer In
是爱教	fulls
7) H 27	
引对安	wo